

### 3. BLS 교육센터운영 규정

#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BLS 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또는 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심폐소생술강사자격(AHA BLS Instructor)을 갖춘 자로서 ‘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(AHA BLS Provider)’의 교육경력이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.

④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3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미국심장협회(AHA)의 기본소생술(Basic Life Support, BLS) Provider 과정 운영
2.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(기초 및 심화) 운영
3.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

#### 제 2 장 운영위원회

제4조 (설치) 센터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제5조 (구성)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전임교원으로서 심폐소생술강사자격(AHA BLS Instructor)을 갖춘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3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 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적용한다.